

1. 개정이유

국민체육진흥법 상 체육지도자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자격검정(필기, 실기, 구술)에 합격한 해의 12월 31일부터 3년 이내에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하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부득이 금년도 연수과정을 미시행하게 됨에 따라 연수과정 이수시까지의 자격검정 합격 유효기간이 사실상 축소되는 효과가 발생함.

금년도와 같이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연수과정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수과정이 시행되지 않은 기간을 자격검정 합격 유효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3년의 유효기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자격검정 합격 유효기간 3년 기간 내에 ‘의무복무 기간’ 뿐 아니라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연수과정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안 제13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 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기간”을 각각 “기간과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연수 과정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연수과정의 이수) ①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제6조제1항에 따라 필기시험에 합격한 해의 12월 31일부터 3년 이내(「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의 의무복무 <u>기간</u> 은 포함하지 않는다)에 연수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와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을 먼저 실시한 경우에는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에 합격한 해의 12월 31일부터 3년 이내(「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의 의무복무 <u>기간</u> 은 포함하지 않는다)에 연수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제13조(연수과정의 이수) ① --- ----- ----- ----- ----- ----- <u>기간과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연수과정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u> ---. ----- ----- ----- ----- ----- ----- <u>기간과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연수과정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u> ----- -----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